

부산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530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5306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20615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철

변론종결 2022. 1. 26.

판결선고 2022. 2. 1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2061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1) 2019. 3. 19. 접수 제16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신민석, 판사 양우창

별지

1)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울산지방법원’은 오키로 보인다.